

조문별 개정이유서(관세법 시행규칙)

□ 중소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확대기한 연장(안 제46조제4항 제2호)

가. 개정 이유

-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국내 제작 곤란한 공장 자동화 기계·설비 등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기한 연장

나. 개정 내용

-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 감면을 한시 확대(중소 70%, 중견 50%)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.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설비 투자 지원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조문별 개정이유서(관세법 시행규칙)

□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 정비(별표 2의4)

가. 개정 이유

-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52개 물품 중 유험과립장치 등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43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.

나. 개정 내용

- **별표 2의4** [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(제46조제2항 관련)]
⇒ **공장자동화물품 43개를 관세감면 대상으로 선정**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설비 투자 지원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